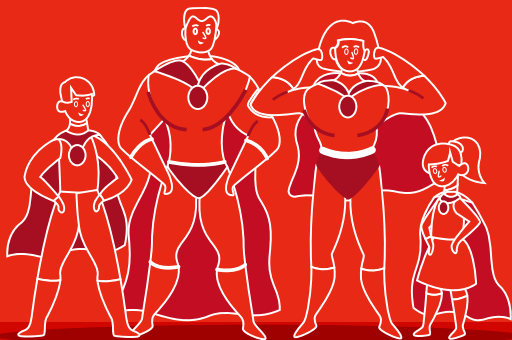


2025.08.2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PA267호 (유효기간: 2026.08.19.)

담당부서: 방카슈랑스사업부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 보장 플랜



무배당 더나은 ABL 안심보험2504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종사자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판매사

보험사

ABL

상품특징



비갱신 보험료,
보장은 최대110세까지!

110세 만기 선택시



확정이율 최대 연3.0% 적용

적용이율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 3.0%,
계약일부터 10년 초과 연 2.0%



보험금 확정지급!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상태 50%, 60%,
80% 이상 시 장해생활자금 120회 확정!
(1형 장해보장형)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보장은 물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걱정 無
(동일한 원인으로 50% 이상 장해상태 시)



보장성 비과세 적용!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세법 요건 충족 시)

※ 위 내용은 상품특징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형 장해보장형

장해진단시 매월 받는 장해생활자금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80% 이상 장해상태 시 **총2억4천8백만원** 보장!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20** 만원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6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80** 만원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80% 이상 장해생활자금

매월 **100** 만원
(120회 확정)
(최초 1회한)



장해보험금

1,000 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장해생활자금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해당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 장해보험금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보험기간 내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80%이상 장해
상태 시 각 장해생활자금(50%,60%,80%) 합산 지급
(단,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



2형 상해보장형

예기치 못한 사고, 일상이 달라져도
든든한 상해보장으로 걱정을 줄이세요.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도장해보험금

3억 원
(최초 1회한)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 ※ 고도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해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 ※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품구성

상품명	상품유형
무배당 더나은 ABL 안심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형 장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_50%)
	2형 상해보장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_50%)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1형 장해보장형		2형 상해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세 만기	5년납	만15세~75세		만 15세~75세	
	7년납			만 15세~73세	
	10년납			만 15세~70세	
	15년납			만 15세~65세	
	20년납			만 15세~60세	
110세 만기	5년납	만15세~75세		만 15세~73세	만 15세~75세
	7년납			만 15세~69세	만 15세~73세
	10년납			만 15세~67세	만 15세~70세
	15년납			만 15세~64세	만 15세~65세
	20년납			만 15세~60세	

※ 온라인 채널 이용 시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만19세부터 각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최대 나이로 함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이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 예시

1형 장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10세만기, 월납, 단위:원]

성별	연령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남자	20	1,008,200	783,000	574,000	405,100	326,300
	30	1,224,900	951,300	697,300	492,000	396,300
	40	1,489,100	1,156,500	847,800	598,200	482,100
	50	1,811,200	1,407,000	1,031,900	728,900	588,300
	60	2,203,400	1,713,100	1,258,400	893,200	726,700
	70	2,696,700	2,106,200	1,561,200	1,134,100	959,200
여자	20	697,500	541,800	397,300	280,600	226,000
	30	846,700	657,600	482,200	340,400	274,200
	40	1,028,800	799,000	585,800	413,400	333,000
	50	1,250,500	971,300	712,100	502,700	405,400
	60	1,519,700	1,181,200	867,300	614,900	500,900
	70	1,854,300	1,450,900	1,078,300	780,800	647,600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성별, 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형 상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10세만기, 월납, 단위:원]

성 별	연 령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남 자	20	1,142,900	887,700	650,900	459,400	370,100
	30	1,387,200	1,077,400	789,900	557,400	449,100
	40	1,685,900	1,309,500	960,100	677,700	546,300
	50	2,050,900	1,593,600	1,169,100	826,400	667,500
	60	2,497,200	1,942,300	1,427,700	1,014,400	826,400
	70	3,065,100	2,395,500	1,777,400	1,293,300	1,095,800
여 자	20	791,200	614,500	450,700	318,200	256,300
	30	960,200	745,700	546,800	385,900	310,800
	40	1,166,700	906,100	664,200	468,800	377,600
	50	1,418,700	1,101,900	807,900	570,300	460,000
	60	1,727,300	1,342,500	985,800	699,100	569,700
	70	2,116,800	1,656,500	1,231,300	891,700	740,200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성별, 가입연령,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1형 장애보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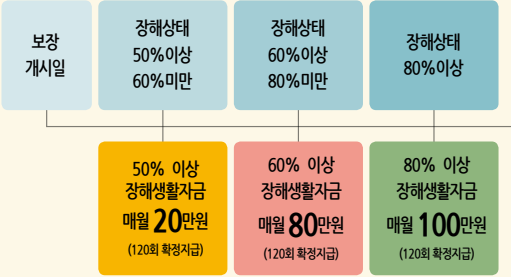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5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2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10만원 지급)
6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8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6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40만원 지급)
80%이상 장해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 :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50만원 지급)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 중 3%이상 100%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100% × 해당 장애지급률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매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5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합니다.
4. '매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6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5. '매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월 도래하는 80%이상 장해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에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합니다.
6.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금을 장해생활자금이라 합니다.
7. 50%이상 장해생활자금과 60%이상 장해생활자금, 80%이상 장해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장해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 장해생활자금을 지급받던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도 미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10. 본 보장내용 설명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상태별 장해생활자금 지급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누적 장해생활자금	장해상태 50%이상 60%미만	장해상태 60%이상 80%미만	장해상태 80%이상
각각의 장해상태시	2,400 만원 (매월20만원x120회)	9,600 만원 (매월80만원x120회)	12,000 만원 (매월100만원x120회)
80% 미만 장해상태시	12,000 만원 [(매월20만원+매월80만원) x120회]		
80% 이상 장해상태시	24,000 만원 [(매월20만원+매월80만원+매월100만원) x120회]		

※ 상기 예시는 이미 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이 없어 최초로 발생한 각 장해생활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장해생활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해생활자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2형 상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애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억원 (최초1회 한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재해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본 보장내용 설명은 요약된 자료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1형 장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10세만기, 5년납, 월납, 단위:만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월납보험료 1,489,100원			월납보험료 1,028,800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786	739	41.4%	1,234	502	40.7%
3년	5,360	2,731	51.0%	3,703	1,877	50.7%
4년	7,147	3,770	52.8%	4,938	2,595	52.6%
5년	8,934	9,679	108.3%	6,172	6,666	108.0%
10년	8,934	11,206	125.4%	6,172	7,721	125.1%
15년	8,934	12,346	138.2%	6,172	8,512	137.9%
20년	8,934	13,585	152.1%	6,172	9,376	151.9%
25년	8,934	14,919	167.0%	6,172	10,305	166.9%
30년	8,934	16,315	182.6%	6,172	11,258	182.4%
50년	8,934	18,415	206.1%	6,172	13,200	213.8%
70년	8,934	-	0.0%	6,172	-	0.0%

- (주) 1.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 3.0%, 10년 초과 연 2.0%입니다.
6.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으로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이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2형 상해보장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110세만기, 5년납, 월납, 단위:만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월납보험료 1,685,900원			월납보험료 1,166,700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023	839	41.5%	1,400	573	40.9%
3년	6,069	3,094	51.0%	4,200	2,133	50.8%
4년	8,092	4,270	52.8%	5,600	2,947	52.6%
5년	10,115	10,961	108.4%	7,000	7,569	108.1%
10년	10,115	12,690	125.5%	7,000	8,770	125.3%
15년	10,115	13,982	138.2%	7,000	9,675	138.2%
20년	10,115	15,393	152.2%	7,000	10,668	152.4%
25년	10,115	16,920	167.3%	7,000	11,743	167.8%
30년	10,115	18,540	183.3%	7,000	12,866	183.8%
50년	10,115	21,744	215.0%	7,000	15,906	227.2%
70년	10,115	-	0.0%	7,000	-	0.0%

- (주) 1.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 연 3.0%, 10년 초과 연 2.0%입니다.
6.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서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으로 상기 예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이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모집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 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05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07 이 상품의 주계약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0%입니다.

08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9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고의사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회사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2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4 불만족 접수 안내

[불만 접수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본사 02-2262-6600 / www.klia.or.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15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6 ABL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카슈랑스사업부 제작(2025.08.2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PA267호
(2025.08.20.~2026.08.19.)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모집종사자로 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

보험사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방카슈랑스사업부 02-3787-7777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심익필 제2025-PA267호 (2025.08.20.~2026.08.19.)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ABL생명 홈페이지(www.abllife.co.kr)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ABL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